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2020 - 호			
계 약 내 용	용 역 명	건축물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				
	계 약 금 액	금 오백이십팔만원정(₩5,280,000)				
	공 급 가 액	금 사백팔십만원정(₩4,800,000)				
	부 가 가 치 세	금 사십팔만원정(₩480,000)				
	계약이행보증금	-				
	지 체 상 금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1000분의 3				
	하자이행보증금	-				
	계 약 기 간	2020. 11. 30 ~ 2021. 01. 20				
기 타 사 항	-					
원사업자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와 수급사업자 (주)명성엔지니어링은 상기 용역에 대하여 불 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불임서류 : 1.내역서						

상기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와 (주)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선무(이하 “계약파트너”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총칙)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와 “계약파트너”는 본 계약서에 작성된 조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제 2 조 (목적)

본 계약은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업무를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의 지시에 따라 “계약파트너”가 성실히 수행하고,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는 계약금액을 “계약파트너”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기술용역”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 및 학술용역을 말한다.

제 4 조 (용역의 내용)

“계약파트너”는 “건축물용벽 정밀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공고” 내용을 본 계약서 및 그 부속문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고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는 그 결과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제 5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쌍방의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 6 조 (과업의 범위)

1. “계약파트너”가 수행할 용역 범위는 “건축물용벽 정밀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공고”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파트너”는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용역의 사소한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제)

아래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계약파트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파트너”는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이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파트너”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계약파트너”가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의 지시에 위배되게 업무를 수행할 때
3. “계약파트너”의 용역이행 태만으로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때
4. “계약파트너”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계약파트너”가 제3자로부터 압류, 보전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 화의 또는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경우
6. “계약파트너”가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
7. “계약파트너”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8. “계약파트너”가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이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 8 조 (계약변경 및 정산)

-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편한세상 동탄아파트”와 “계약파트너”가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2) 정밀안전점검비는 발주처에서 정산한 금액비율에 의해 정산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석)

- (1) 계약서 등 제반 서류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 (2)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겨우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소송법원으로 한다.

제 10 조 (대금의 지급조건)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는 본 용역 성과품 제출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11 조 (법규준수의 의무)

“계약파트너”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안의 의무)

“계약파트너”는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의 관리 및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이를 업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함으로써 인해 야기 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파트너”가 그 법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진다.

제 13 조 (저작권 및 소유권)

“계약파트너”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보고서의 소유권은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에 귀속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 (1) “계약파트너”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 (2)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파트너”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경우 “계약파트너”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파트너”는 이에 동의 한다.

제 15 조 (하도급 및 채권 양도금지)

“계약파트너”는 본 계약에 대하여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부분 하도급이나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 16 조 (성과품제출)

계약기간 내에 과업완료 후 “계약파트너”가 제출한 성과품이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의 요구에 따라 “계약파트너”는 용역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약서의 보관)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와 “계약파트너”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이편한세상동탄아파트”와 “계약파트너”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산출내역서

구 분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건축물용벽 정밀안전점검					
I. 공급가액				4,800,000	
1. 기본 대가				4,809,598	
가. 직접 인건비				3,535,230	
(1) 외업	인·일	9	235,682	2,121,138	
(2) 내업	인·일	6	235,682	1,414,092	
나. 제 경 비	식	1		500,000	
다. 기 술 료	식	1		300,000	
라. 직접 경비				474,368	
(1) 여비 및 채제비					
(가) 일 비	인·일	9	20,000	180,000	
(나) 숙박비	인·일	-	-	-	
(다) 여 비	인·일	-	-	-	
(2) 차량 운행비	일	3	21,456	64,368	
(3) 현지 보조인부	인·일	-	-	-	
(4) 위험수당	식	1		80,000	
(5) 기구, 기계 손료	식	1		50,000	
(6) 보고서 인쇄비	식	1		100,000	
절 사				9,598	
II. 부가가치세	%	10		480,000	
합 계				5,280,000	